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획위원회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기획처), 02-970-2978

제정 2012. 3. 1. 개정 2020. 8. 11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획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교육개혁과 제도 개선
 - 2. 대학종합진단
 - 3. 대학정책 수립에 관한 기초계획
 - 4. 대학행정 및 경영 평가
 - 5. 대학 시설 및 환경 개선에 대한 주요사항
 - 6.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요청한 대학 정책 기획에 관한 중요사항
-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기획평가과 장이 된다.

- 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(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)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- 제7조(소위원회)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8조(수당 등)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등을 수행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9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한 후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(제34호, 2012. 3. 1)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549호, 2020. 8. 1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